

배심평의의 양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기술하는 세 가지 지수

박광배 이은로
충북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실험연구와 모의재판연구의 평의자료를 분석하여 평의의 균형성과 풍부성 등의 전반적인 양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요약하는 세 가지의 기술적 지수(descriptive index)들을 제안하였다. 2004년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모의배심재판의 배심평의자료를 세 가지 지수들로 요약한 결과, 배심평의에서 배심원들이 행한 '발언(utterance)'과 '개입(intervention)'의 빈도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세 가지 지수들은 각각 발언빈도의 동등성(equality), 개입경로의 풍부성(richness), 개입경로의 균등성(evenness)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심평의에 관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모의재판 연구와 실험연구의 평의자료에 대하여 이 지수들을 적용하고, 향후 한국에서 그러한 연구들이 누적되면 각기 다른 형태의 배심평의들에 내재하는 고유한 특성들에 대하여 일관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대상이 되었던 모의재판의 배심평의자료에 대해서는 잠정적이거나마, 혼합배심단의 평의가 평의에 참여하는 직업법관의 개인적 특성과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의초기 의견의 분포에 따라서 그 토의양태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제시되었고, 이 점에 대하여 향후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요어 : 배심평의, 시민배심, 혼합배심, 양적 특성, 발언, 개입, 개입경로, 동등성, 풍부성, 균등성, 지수

배심재판의 평의에 직업법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와 순수하게 일반시민들만 참여하는 경우에 평의 구성원들이 풀고루 발언하는 정도 혹은 토의에 개입하는 빈도의 균형성에서 어떤 차이가 날 것인가? 배심단의 구성원 수가 많을 때와 적을 때 배심원들이 고른 빈도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날 것인가? 배심재판의 평의에 직업법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 일반시

민들이 각자 주로 직업법관하고 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시민들끼리도 활발한 토의를 전개할 것인가? 평의에서 지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경우 혹은 지시적인 성향을 가진 직업법관이 참여하는 경우에 다른 배심원들이 토의에 참여하는 적극성에서 차이가 날 것인가? 배심평의에서 발언의 균형성, 토의에 개입하는 정도에서의 균형성 혹은 형평성, 평의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

이 논문은 2006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수고해준 중앙대학교의 서혜선양과 자료를 시작화하는 방법 및 생태계 지수들의 수학적인 속성에 관하여 유용한 도움을 제공해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의 안용열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박광배, 이은로는 충북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음.

교신저자 : 박광배, (361-763) 충청북도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43) 261-2195,

Email : kwangbai@chungbuk.ac.kr

로의 풍부성과 다양성 등에 관한 이러한 의문들은 배심평의의 전반적 특성을 관찰하는 의문들이고, 그러한 전반적 특성의 파악은 배심평의의 전반적 질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많은 뉘세포들이 신경망에 의해 다양하게 연결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리적 상태만으로도 신경망이 성기게 생성된 경우보다 정보 처리의 효율성이 높은 뉘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가 교환되는 경로가 다양하고 풍부한 집단토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하여 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가치관, 선호, 견해, 판단 등이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그 결론이 보다 다각도에서 검토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심평의가 어떤 경우에 그러한 균형성과 풍부성이 높아지고, 어떤 경우에 낮아지는 것인지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과 모의재판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많은 실험과 모의재판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연구들에서 이루어진 배심평의의 균형성과 풍부성 등을 일관된 개념으로 조작정의하여 계량화하지 않으면 그 연구들의 결과가 취합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실험연구와 모의재판연구의 자료를 분석하여 배심평의의 균형성과 풍부성 등의 전반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요약하는 분석개념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사법제도개혁위원회와 대법원이 2004년에 실시한 모의배심재판의 시민배심평의와 혼합배심평의의 녹취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모의배심재판에서 이루어진 평의의 의미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은 이미 박광배, 김상준, 이은로, 서혜선(2005)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배심원들의 발언과 대화의 양(빈도)을 중심으로 배심평의의 전반적인 양적 특성 자체를 기술적으로(descriptively) 비교할 수 있는 계량적 지수들을 제안하고, 모의배심재판의 시민배심평의와 혼합배심평의의 녹취자료를 이용하여 그 지수들이 배심평의의 전반적 특성들을 집약적으로 잘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본 연구의 배경과 배심평의 분석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배심평의의 전반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수들을 제안한 후, 실제의 모의재판 평의자료를 이용하여 그 지수들이 함축하는 의미를 검증하고자 한다.

배 경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공판절차에 판단주체로서 참여하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는 일반시민이 직업 법관과 동등한 역할로 재판에 참여하고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하여 직업 법관과 함께 의논하며, 표결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직업 법관과 동일한 표결권을 행사하는 “혼합배심제도(escabinado system, mixed-jury system)”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순수하게 일반시민들로만 구성된 배심단이 직업 법관의 판여 없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시민배심제도(lay jury system)”이다. 일반적으로 혼합배심제도는 프랑스, 이태리, 독일, 포르투갈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고, 시민배심제도는 과거에 영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미국과 호주 등의 국가들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다.¹⁾ 또한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절차에서는 시민배심제도를 채택하는 반면, 유죄가 결정된 피고인의 양형을 위한 재판절차에서는 혼합배심제도를 채택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는 2009년부터 “saiban-in seido(裁判員制度)”로 불리는 혼합배심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사법을 확립하고자 2007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

1) 일반시민이 직업법관들과 함께 평의하여 판결하는 제도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매사건마다 새로이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시민이 직업법관과 함께 평의에 참여하는 제도유형이고, 둘째는 한번 선정된 일반시민이 일정한 임기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여러 개의 형사재판에서 직업법관들과 함께 평의에 참여하는 제도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의상 전자의 평의를 혼합배심평의로 지칭하고, 후자를 참심평의로 지칭한다. 그러나 두 제도유형(혼합배심평의제도와 참심평의제도)에서 공판절차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즉, 재판 중에 일반시민이 판사와 함께 법대에 착석하여 피고인 신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판절차만을 지칭할 때는 두 제도 모두를 공히 참심제도(tribunal system) 혹은 참심재판(tribunal trial)으로 지칭한다. 반면에 일반시민들이 매사건마다 새로이 무작위로 선정되고, 평의가 직업법관의 참여 없이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시민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제도에서는 공판절차 중에 일반시민들이 법대와는 분리된 별도의 배심원석에서 재판을 관람하고 피고인 신문 등의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한 제도에서의 공판절차는 배심제도(jury system) 혹은 배심재판(jury trial)으로 지칭한다.

도(lay participation trial system)'가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 2012년까지 운영될 시범적인 제도에서는 영미식 시민배심제도의 요소와 유럽식 혼합배심제도의 요소가 혼용된 형태의 국민 참여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5년에 성안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5명 내지 9명의 배심원들이 판사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되, 만약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된 결정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주재한 판사가 배심원들의 평의에 입회하여 관련법 및 법적인 판단기준 등의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배심원들과 함께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관하여 토의한 후 배심원들이 다수결 원칙에 의한 표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단, 판사는 최종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2007년부터 5년간 시행될 제도에서는 배심원들만의 평의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가 만장일치로 결정되면 시민배심제도적 절차에 의해 평의과정이 종료되고, 만장일치로 합의된 결정이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혼합 배심제도의 특성을 가진 평의절차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평의절차를 이와 같이 두 가지 제도가 혼용된 형태 혹은 두 단계 형태로 구성하게 된 주된 이유는 5년간의 시범실시 기간 중에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운영해 보고, 각 제도의 장단점을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실정에 더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2012년부터 시행될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안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이루어질 많은 모의재판의 평의특성을 양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개념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배심단의 구성형태에 따른 평의특성의 차이

각기 다른 절차 및 배심단 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배심평의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연구방법과 연구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그 수에 있어서 매우 희귀하고 연구범위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Palmer(1988)는 배심단의 구성형태(혼합배심 v. 시민배심)와 평의시간의 제한 여부(제한 v. 무제한)에 따라서 배심원들이 평의 중 의견을 바-

꾸는 횟수에서 차이가 나는지, 배심단의 최종평결에서 차이가 나는지, 평결에 대한 만족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시민배심평의보다 혼합배심평의에서 배심원들이 평의 중에 더 빈번하게 의견을 바꾸었고, 시민배심평의보다 혼합배심평의에서 더 피고인에게 엄격한 평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평의과정에 매우 인위적인 조작이 첨가되었는데, 평의 도중에 배심원들은 자신의 생각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생태계 타당도(ecological validity)가 매우 낮다는 결함을 가진다. 반면에 Cajal-Blanco(1994)는 거의 유사한 실험연구에서 절도와 같은 경죄사건에서는 오히려 시민배심평의보다 혼합배심평의에서 더 피고인에게 관대한 평결이 이루어지는 반면, 살인 및 강간과 같은 중죄사건에서는 최종 평결이 배심단의 구성형태와 무관하다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Arce et al.(1996)은 한명의 직업법관과 5명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혼합배심단을 구성하여 강간사건에 관한 녹화된 재판을 관람하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하여 평의하게 하였는데, 이때 직업법관의 평의초기 의견이 일반시민들의 의견과 반대가 되도록 조작하였다. 그 결과 언제나 직업법관의 초기의견대로 배심단의 최종평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Kaplan & Martin(1999, 2000)는 혼합배심평의에서 가치판단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직업적 전문가가 비전문가인 일반시민에게 큰 영향을 주고 평의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더 능동적으로 평의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Martin, Kaplan & Alamo(2003)는 각 7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20개의 배심단을 구성하여 모의재판에 대한 평의에서 어떤 특성이 발견되는지를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는데, 10개의 배심단은 일종의 '시민배심단'의 형태가 되도록 배심원 모두를 순수하게 심리학 전공 대학 초년생들로 구성하였고, 10 개의 배심단은 일종의 '혼합배심단'이 되도록 배심원 중 2명은 법과대학 졸업반 학생이고 나머지 5명은 심리학 전공 대학 초년생들로 구성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법전문가가 배제된 시민배심단과 법전문가가 포함된 혼합배심단은 최종평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각 배심원이 평의초기에 가지고 있던 의견을 평의

과정에서 바꾸는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법전문가가 포함된 배심단이 법전문가가 배제된 배심단에 비해서 법적 원칙과 법률사항에 대하여 다소 더 많은 대화를 하였다는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법과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전반적으로 평의과정에서 두 형태의 배심단은 거의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다.

스페인에서 Arce, Tortosa, & Alfaro(2004)는 9명의 일반시민들(평균연령 25.53세, 81.4%가 여성, 87.3%가 미혼)로 이루어진 시민배심단 15개와 3명의 직업법관들로 구성된 합의재판부 15개를 구성하여 평의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비록 시민배심평의와 혼합배심평의를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대하여 비전문가 집단들과 전문가 집단들의 평의내용을 분석한 것이므로 시민배심평의와 혼합배심평의의 차이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산출되었다 : (1) 15 개의 합의재판부들은 모두 동일한 평결을 도출하였으나, 15개의 시민배심단들의 평결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2) 합의재판부에서보다 시민배심단에서 대화(intervention)의 수가 더 많았다; (3) ‘있었던 사실’ 및 ‘추정된 사실’에 대한 대화가 합의재판부에서보다 시민배심단에서 근소하게 더 많았다; (4) 최종 판결 및 그와 관련된 법률적 요건 및 종국적 결과에 대한 대화 또한 합의재판부에서보다 시민배심단에서 더 많았다(즉, 비전문가들이 잘 모르는 법률적 사항들에 대해서 더 많이 논란을 벌였다); (5) 중언의 신빙성에 관련된 대화의 양에서는 시민배심단과 합의재판부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6) 물적, 정황적 증거의 신빙성에 관련된 대화의 양에서도 시민배심단과 합의재판부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7) 피고인에게 불리한 지향가(valence)를 가진 대화가 시민배심단보다 합의재판부에서 더 많았다. 스페인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실험결과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추정한다면, 혼합배심제도에서는 시민배심제도에서보다 판결의 일관성(같은 사건에 대한 다수 판결들의 일치성)이 다소 더 높을 것이고, 판결들이 다소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경향을 가질 것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배심원의 평의와 토론과정에 관한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들이 평의와 토론의 내용 즉, 질적 특성을 다루고 있어

서 양적 특성을 다루는 연구를 국내외에서 찾기 어렵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평의와 토론의 양적 특성을 개념화하기 어렵고, 개념화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평의와 토론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를 개념화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혼합배심평의와 시민배심평의의 차이에 관하여 외국에서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들은 평의 자체의 전반적 특성차이에 주목하기 보다는 최종평결, 의견을 바꾸는 횟수, 특정한 토의에 대한 대화의 양 등의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종속변인들에서의 차이 혹은 그러한 종속변인들에 대한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혼합배심평의와 시민배심평의가 가지는 전반적 특성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러한 구체적인 종속변인들에 대한 효과를 명확히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Palmer(1988)의 연구에서 시민배심평의보다 혼합배심평의에서 배심원들이 평의 중에 더 빈번하게 의견을 바꾸었다는 결과가 산출되었으나 시민배심평의와 혼합배심평의의 특성이 서로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가 규정되지 않으므로 그 이유를 추정하기 어렵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재판제도의 고안과 개혁 및 보완을 위해서는 배심원들이 평의 중에 얼마나 빈번하게 의견을 바꾸는지 보다는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배심평의의 속성을 이해하고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국민 참여재판제도를 고안하기 위해서는 배심평의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연구에 앞서 우선 배심평의의 전반적 특성을 기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석개념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배심평의의 양적 특성

배심평의의 양적 특성을 규정하는 개념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발언(utterance)’, ‘개입(intervention)’, 그리고 ‘개입경로(intervention path)’의 개념을 우선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발언’이란 대화 혹은 진술의 기본적 구성단위 중의 하나를 일컫는 개념인데(Bakhtin, 1981, 1986; 박광배, 김상준, 이은로, 서혜선, 2005), 음성학적으로 앞과 뒤에 짧거나 긴 침묵(silence)으로 둘러싸인 말의 단위를 말한다. 즉, 말의 세부적 의미 내용이 바뀌는 각각의 전환을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모

든 발언은 항상 앞선 발언에 대한 대답이거나 앞선 발언에 의해 조건 지워지거나 혹은 앞의 발언을 한정하는 (qualifies) 역할을 한다(Holquist, 1990). 문자로 채록된 형태에서 발언은 대개 하나의 단문(sentence) 혹은 독립적인 구절(clause)에 해당된다. 구절이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의미내용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군집인데, 때로 주어가 표현되지 않고 함축되어 있기만 한 경우도 있다. 구절의 다른 정의는 주어와 술어를 가지며 연합문이나 복문(compound or complex sentence)의 부분을 이루는 단어군집이라는 것이다. 구절은 쉼표나 상용하는 접속사 또는 접속사 없이 쌍반점(semicolon)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친구도 이랬다, 저랬다 번복했고, 당구장 주인도 번복했다”와 같은 말은 두 개의 발언으로 이루어진 전술이다.

‘개입’이란 발언 혹은 발언들을 함으로써 대화 혹은 토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배심평의 상황에서는 각 배심원의 발언이 특정인을 향하거나 특정인의 말에 반응하는 등, 특정한 배심원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인 경우도 있지만, 전체 집단을 향한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다른 배심원들과 집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개입’이란 특정한 타깃을 향하여 방향성을 가지고 주고받는 협의의 의사소통을 포함하고, 또한 일대일로 직접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어도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포함하는 광의의 의사소통 개념이다. 간단히 말해서, 한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해서 그 말을 끝마치고 다음 사람의 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한 개의 ‘개입’이다. 따라서 한 개의 ‘개입’은 여러 개의 ‘발언’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수의 구성원이 토의를 행하는 상황에서 ‘개입경로’란 한 구성원이 개입한 후에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거나 혹은 주제를 바꾸어 다른 내용의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 A가 개입하고(즉, 말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개입했다면, 이 상황을 A-B로 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A와 B 사이에 하나의 개입경로가 생성된 것이다. 경로는 ‘길’ 혹은 ‘통로’의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가 개입하고, 그 다음에 B가 개입한 경우와 B가 개입하고, 그 다음에 A가 개입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한 개의 개입경로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A가 개입

하고, 그 다음에 B가 개입하였으며, 이어서 A가 다시 개입하였다면 한 개의 개입경로가 두 번 사용된 것이다.

발언빈도의 동등성

발언빈도의 동등성(equality)은 각 구성원의 발언빈도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균일하게 분포하는가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 세 명의 구성원들(A, B, C)에 의해 진행된 집단토의에서 총 30 번의 발언이 이루어졌는데, A가 10번, B가 10번, C가 10번 발언한 경우는 A가 25번, B가 4번, C가 1번 발언한 경우보다 동등성이 높다.

개입경로의 풍부성

개입경로의 풍부성(richness)이란 구성원들 사이에서 개입경로가 분화된 정도를 일컫는 개념인 바, 개입경로가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골고루 생성되는지, 아니면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생성되고 다른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생성되지 않는지에 관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세 명의 구성원(A, B, C)에 의한 토의과정에서 총 네 번의 개입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그 네 번의 개입이 구성원들 A, B, C, A의 순서로 이루어졌다면 개입경로는 A-B, B-C, C-A의 세 개가 생성된다. 그러나 만약 네 번의 개입이 A, B, C, B의 순서로 이루어졌다면 개입경로는 A-B, B-C의 두 개가 생성된다(B-C와 C-B는 동일한 경로이므로 한 개의 경로로 간주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구성원 A와 C 사이에서는 개입경로가 생성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일부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다른 일부 구성원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주고받은 바가 없다면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다양하게 골고루 대화를 한 경우와 비교할 때 비록 총 대화의 양은 동일할지라도 후자가 전자보다 더 높은 개입경로의 풍부성을 보이게 된다.

개입경로의 균등성

개입경로의 균등성(evenness)은 생성된 개입경로들의 사용빈도가 개입경로들 사이에 얼마나 골고루 혹은 균질적으로 분포하는가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 세 명의 구성원들이 B, A, C, A, C의 순서로 개입한 경우에 비하여 A, B, A, C, A의 순서로 개입한 경우가 개입경로의 균등성이 더 높은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B, A, C, A, C)에는 A-C 경로가 3번 사용되고 A-B 경로가 한 번 사용된 반

면, 후자의 경우(A, B, A, C, A)에는 A-B 경로와 A-C 경로가 각각 두 번씩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경우에서 총 벌언의 횟수와 개입경로의 풍부성은 동일하다.

평의의 양적 특성

평의의 양적 특성은 벌언빈도의 동등성, 개입경로의 풍부성, 그리고 개입경로의 균등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평의가 소수의 구성원들에 의해 장악되거나 지배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구성원들이 고르게 토의에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나타내는 기술적(descriptive) 개념이다.

토론과정에서 한 구성원이 토론에 개입하는 빈도와 개입하는 시간은 상관관계가 약하다. 예를 들어, 단 한번 토론에 개입하였으나 매우 장황하게 말한 사람도 있고, 매번 짧막하게 말을 하면서도 여러 번 개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각 구성원의 개입빈도와 개입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벌언’은 짧막한 구절로 이루어지고, 그 길이에서 편차가 크지 않은 까닭에, 일반적으로 벌언빈도와 벌언시간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박광배 외, 2005). 즉, 벌언빈도가 많은 구성원은 벌언시간 또한 같다. 따라서 벌언빈도의 동등성이 높은 집단토의는 모든 구성원이 벌언빈도와 벌언시간에서 공평하게 토의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벌언빈도의 동등성이 높을수록 구성원들의 벌언빈도가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때에는 각 구성원의 벌언화률이 유사하므로 다음 벌언을 어떤 구성원이 하게 될지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개입경로의 균등성은 대화의 편중성을 나타낸다. 총 벌언의 횟수가 동일하고, 또한 개입경로의 풍부성이 동일한 경우에도 개입경로의 균등성이 낮으면 대화가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화를 많이 주고받는 일부 구성원들에 의해서 평의과정과 대화내용이 장악될 가능성이 높다.

벌언빈도의 동등성과 개입경로의 균등성은 평의의 각기 조금 다른 전반적 특성을 나타낸다. 앞에서 기술한 예에서 세 명의 구성원들이 B, A, C, A, C의 순서로 벌언한 경우에 비하여 A, B, A, C, A의 순서로 벌언한 경우가 개입경로의 균등성은 더 높지만, 벌언빈도의 동등성은 더 낮다. 또한 토의과정에서 한 사람의 한 차례 진술은 한두

개의 벌언들로 구성될 수도 있고, 수십 개의 벌언들로 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언빈도의 동등성과 개입경로의 균등성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벌언빈도의 동등성과 개입경로의 균등성이 평의의 각기 조금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므로 그 다른 특성들을 별개의 지수들로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집단토의 상황에서 개입경로의 풍부성 개념은 마치 뇌 세포들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신경망의 분화된 정도와 같은 개념이다. 개입경로의 풍부성이 높은 집단토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하여 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가치관, 선호, 견해, 판단 등이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그 결론이 보다 합리적인 혹은 다각도에서 검토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의의 양적 특성을 구성하는 벌언빈도의 동등성, 개입경로의 풍부성, 그리고 개입경로의 균등성은 서로 다소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개념들이기도 하지만, 각각 독특한 평의의 특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평의의 양적 특성을 구성하는 개념들이 벌언빈도의 동등성, 개입경로의 풍부성, 그리고 개입경로의 균등성 중 어떤 특성에서 혼합배심평의와 시민배심평의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어떤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면 그 두 가지의 구성형태를 가지는 배심단들의 전반적 평의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2004년에 이루어진 모의재판에서는 공판절차가 두 번 반복되었다. 첫 번째로는 전형적인 영미식 배심재판절차에 의해 공판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직업법관이 재판장으로써 공판절차를 지휘하고 지역주민들 중에 선발된 12명의 배심원들이 법대와 분리된 배심원석에서 공판절차를 참관한 후 재판장의 참여 없이 독자적인 평의를 하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관하여 평결하였다. 두 번째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유럽식 참심재판절차에 의해 공판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일반시민이 직업법관과 나란히 법대에 함께 착석하여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한 후, 직업법관과 함께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의를 하였다. 본 연구

의 분석대상은 세 개의 시민배심단과 두 개의 혼합배심단의 평의들에서 이루어진 배심원들과 판사(직업법관)들의 발언이다. 시민배심원들과 평의에 참가한 판사들의 개인별 발언빈도와 평의 중에 생성된 각 개입경로의 사용빈도를 분석하였다. 그 빈도들을 이용하여 각 배심단에서의 벌언빈도의 동등성, 개입경로의 풍부성, 그리고 개입경로의 균등성을 지수화하고, 그 지수들에서 시민배심평의와 혼합배심평의를 비교하였다.

모의재판

모의재판을 위한 범죄 시나리오는 실제의 살인 범죄 사건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데, 20대 남자 범인, 40대 여자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딸이자 목격자인 20대 여자와 그 외 다른 증인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시되었다(자세한 내용은 박광배 외, 2005 참조). 한국에는 배심재판을 위해 설계된 법정이 없기 때문에 서울중앙법원의 실제 법정 중의 하나를 미국식 법정구조로 개조하여 모의재판이 이루어졌다. 모의재판에서는 현역 변호사들이 판사, 변호인,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모의재판은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두 차례 이뤄졌는데 오전에 미국식 배심재판을 하고 오후에는 유럽식 참심재판이 진행되었다.

시민배심단의 구성과 평의

모의배심재판에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시민들은 서울중앙법원이 소재한 지역에 살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들 중에서 모의재판 참여를 희망한 36명이었으며, 세 배심단에 각각 12명씩 할당되었다. 한 배심단(A)이 선서를 한 후 법정에 마련된 배심원석에 앉아서 재판을 관람하였고, 다른 두 배심단(B, C)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서 재판을 관람하였다. 모의배심재판은 약 3 시간간격 진행되었고, 재판절차가 종료된 후에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배심평의를 위한 지침(instruction)을 설시하였다.

각 시민배심단은 분리된 방에서 평의를 진행하였다. 평의를 위한 제한시간은 없었고, 모든 평의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평의가 녹화된 테이프의 음성자료는 나중에 분석을 위하여 글로 채록되었다. 각 시민배심단은 평의를 하기에 앞서 대표(fore-person)를 선출하였고 평의초기에 이루어진 초기의사확인 발언에서 총 36명의 시민배심원

들 중에서 6명이 유죄의견을 표명하였고, 3명이 불확정이었고, 나머지 배심원들은 무죄의견을 표명하였다(평의에 참가한 배심원들의 성별과 의장의 학력 등 자세한 사항은 박광배 외, 2005 참조). 시민배심단 A와 C는 약 90분 동안 평의를 하였고, 시민배심단 B는 평의를 위하여 약 60분이 소요되었다. 세 시민배심단 모두 최종적으로 만장일치의 무죄평결을 하였다.

혼합배심단의 구성과 평의

모의참심재판은 모의배심재판에 뒤이어 같은 시나리오로 되풀이하여 진행되었다. 여기에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시민들 역시 법원이 소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모의재판 참여를 희망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재판 중에는 혼합배심평의에 참석하게 될 시민배심원과 세 명의 판사가 법대에 함께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였다. 재판절차가 끝난 후에 두개의 혼합배심단이 구성되었는데, 첫째는 재판장과 두 명의 배석판사들 그리고 두 명의 시민배심원들이 혼합배심단을 이루어 평의를 진행하였다. 평의에 세 명의 판사가 참여하였으므로 이 평의집단을 ‘합의부 혼합배심단’으로 지칭한다. 또 다른 방에서는 한 명의 판사와 5명의 시민배심원들이 혼합배심단을 이루어 평의를 진행하였다. 평의에 한 명의 판사가 참여하였으므로 이 평의집단을 ‘단독부 혼합배심단’으로 지칭한다. 단독부 혼합배심단을 구성한 판사와 일반시민들은 공판절차 중에는 법대에 착석하지 않고 별도의 좌석에서 공판을 참관하였다. 두 혼합배심단 모두 평의에서 판사가 평의 초기에 평의를 위한 지침을 설명하였다. 시민배심평의와 마찬가지로 혼합배심평의의 경우에도 역시 평의를 위한 제한시간은 없었고, 모든 평의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평의가 녹화된 테이프의 음성자료는 나중에 분석을 위하여 글로 채록되었다.

합의부 혼합배심단의 시민배심원 중 한명과 판사 한명이 평의초기에 불확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단독부 혼합배심단에서는 평의초기에 판사가 불확정 의견, 한 명의 시민배심원이 유죄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혼합배심단의 그 외 나머지 구성원들은 평의초기에 모두 무죄의견을 제시하였다. 합의부 혼합배심단은 약 55분 동안 평의하였고 단독부 혼합배심단은 약 85분 동안 평의하였다. 평의가 끝난 후 두 혼합배심단 모두 만장일치의 무죄평결을 하였다.

분석단위

본 연구에서는 배심평의의 양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단위(analysis unit)를 ‘발언’과 ‘개입’으로 전제하였다. ‘발언’은 앞서 정의된 바와 같이 주어와 술어를 가지며 연합문이나 복문(compound or complex sentence)의 부분을 이루며 하나의 의미내용을 함축하는 단어 군집을 말한다. 반면에 ‘개입’은 한 사람이 발언을 하고 이어서 다른 사람이 발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한 개의 개입은 여러 개의 발언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개입경로’란 한 구성원이 말을 한 후에 그 말에 대하여 반응하거나 혹은 주제를 바꾸어 다른 내용의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의 개념이다. 따라서 특정한 배심단의 구성원의 수를 I 로 표기하면, 그 배심단의 평의과정에서는 최대 $I(I-1)/2$ 개의 개입경로가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2명으로 이루어진 배심단의 평의에서는 최대(12×11)/ $2=66$ 개의 개입경로가 생성될 수 있고, 6명으로 이루어진 배심단의 평의에서는 최대(6×5)/ $2=15$ 개, 5명으로 이루어진 배심단의 평의에서는 최대(5×4)/ $2=10$ 개의 개입경로가 생성될 수 있다.

평의의 양적 특성 지수

발언빈도의 동등성

발언빈도의 동등성은 각 구성원의 발언빈도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균일하게 분포하는가의 개념이므로 정보엔트로피(information entropy) 개념에 기초하여 지수화할 수 있다. 정보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정보엔트로피의 개념은 원래 전기공학에서 발전한 개념인데(Shannon, 1949), 심리학(Atteave, 1959; Miller, 1964)과 생물학(Shannon & Weaver, 1963) 등에서도 생태계 현상을 기술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²⁾ Litchfield(1999)는 동등성 지수가 가져야 할 다섯 가지 성질로 Pigout-Dalton

2) 정보엔트로피는 정보에 함축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만약 두 개의 상자 중 하나에 공이 들어 있을 확률이 상자마다 동일하고 그 상자들 중에 어떤 것에 공이 들어있는지를 맞추는 경우에는 각 상자에 공이 들어있을 확률이 0.5이다. 반면에 네 개의 상자 중에 어떤 것에 공이 들어있는지를 맞추는 경우에는 각 상자에 공이 들어있을 확률이 0.25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가 전자의 경우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이고 또한 정보엔트로피가 높은 경우이다.

전이 원리(transfer principle), 척도 독립성(scale independence), 모집단 원리(population principle), 익명성 또는 대칭성(anonymity or symmetry), 분해성(decomposability) 등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동등성 지수 중 엔트로피 계열의 지수들이 이 다섯 가지 특성을 충족시킨다고 하였다.³⁾

평의에 참여한 구성원의 수를 S 로 표기하고, 평의과정에서 생성된 총 발언빈도에 대한 각 구성원의 발언빈도의 비율을 $p_1, p_2, p_3, p_4, \dots, p_S$ 로 표기하면 엔트로피

3) Litchfield(1999)는 불평등성의 측정 방법과 도구들을 설명하면서, 불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해 10여 가지 이상의 측정치들이(measures) 사용되고 있는데 이 측정치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Cowell(1985)이 제안한 5가지 공리(axioms)를 소개하였다. (1) Pigout-Dalton 전이 원리는 예를 들어 소득의 불평등지수에서 더 가난한 사람의 수입이 더 부유한 사람의 수입으로 이전되면 불평등측정치가 높아져야 하고(최소한 낮아지지 않아야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아져야 한다(최소한 높아지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계열과 Atkinson 계열, 그리고 지니(Gini) 계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수들이 이 원리를 충족하는데 로그화된 변량 지수들은(the logarithmic variance, the variance of logarithms) 이 원리를 충족시키지 못 한다(Cowell, 1995). (2) 척도 독립성은 불평등성 측정치가 똑같은 비율 변화에 대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각 개인들의 수입이 같은 비율로 변화했을 경우(예를 들어 화폐 단위 변화와 같은 경우) 불평등성 측정치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역시 변량(지수)은 이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각 개인들의 수입이 모두 2배 증가한 경우 변량은 2^2 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3) 모집단 원리는 모집단을 복제하여도 불평등성 측정치가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같은 분포를 합병하여도 불평등성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4) 대칭성은 익명성이라고도 불리는데, 불평등성 측정치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 이외의 다른 특성에 대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입이나 다른 측정 지표의 분포가 같으면 다른 개인이나 기구, 다른 배심원들로 측정 대상(vector)이 치환되어도 불평등성 측정치는 같아야 한다. (5) 분해성은 전반적 불평등성이 분포의 구성 부분들과 일관되게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집단의 각 하위 집단들 사이에서 불평등성이 높아지면 전반적 불평등성도 커져야 한다. GE 계열의 측정치들은 쉽게 분해되며 집단 내 불평등성과(within-group inequality) 집단 간 불평등성(between-group inequality)의 성분으로도 쉽게 분해된다. 그런데 Atkinson 계열의 불평등성 측정치들은 두 성분으로 분해되기는 하지만 집단 내 불평등성과 집단 간 불평등성 성분을 더해도 전체 불평등성의 총합이 되지 않는다. 지니계수의 경우 구분이 겹치지 않을 때에만 즉 수입 벡터에서 모집단이 겹쳐지지 않을 때에만 분해된다. Cowell(1995)은 일반화된 엔트로피 계열의 측정치들은 모두 이 5 가지 공리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H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 = - \sum_{i=1}^S p_i \ln(p_i)$$

엔트로피 H 의 정의에서 $\ln(\cdot)$ 는 자연로그를 의미한다. 엔트로피 H 는 각 구성원의 발언비율이 동등할수록 커지는 경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세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토의집단에서 A가 10번, B가 10번, C가 10번 발언한 경우는 $H=1.099$ 인 반면, A가 25번, B가 4번, C가 1번 발언한 경우는 $H=0.534$ 이다. 이 지수를 엔트로피로 치환하는 이유는 각 구성원의 발언비율이 동등할수록 특정한 시점에서 누가 발언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이때 H 의 값이 커지므로 이 지수는 결국 발언자 예측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발언자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발언빈도가 발언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H 공식의 \sum 기호가 암시하듯이, 엔트로피 지수 H 는 배심단 구성원의 수(S)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구성원의 수가 서로 다른 배심단들을 발언빈도의 동등성에서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수의 차이에 의한 지수 값의 증감효과를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 수의 차이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는 방법은 엔트로피 H 를 다음과 같이 규준화(normalize)하는 것이다.

$$\text{규준엔트로피} : E = \frac{\exp(H)}{S}$$

각 구성원이 동일한 비율로 발언하였을 때(즉, $p_1 = p_2 = p_3 = p_4 = \dots = p_S$), 엔트로피 지수 H 는 최대가 되고, 이때 $\exp(H)=S$ 가 된다. 따라서 규준엔트로피 지수 E 의 최대 가능한 값은 구성원 수에 상관없이 항상 1이다.

개입경로의 풍부성

개입경로의 풍부성은 집단토의 혹은 평의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대화에 개입하는 경로가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풀고루 생성되는지, 아니면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생성되고 다른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생성되지 않는지에 관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집단토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가 I 일 때, 그 집단토의에서 생성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의 수는 $S=I(I-1)/2$ 이다. 평의과정에서

실제로 생성된 혹은 발생한 개입경로의 수를 K 로 표기하고, 특정한 배심단에서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의 총 수를 S 로 표기하며,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가 실제로 사용된 총 횟수를 N 으로 표기하면, 개입경로의 풍부성 지수(intervention paths richness index : R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RI = \left(\frac{K-1}{S} \right)^{\ln(N/S)} \quad \text{단, } N > S$$

배심평의에서 개입경로의 풍부성을 지수화하기 위해서는 개입의 총 빈도(N)가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의 총 수(S)보다 큰 상황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토의에 개입하는 빈도가 그 집단에서 가능한 모든 대화경로의 수보다 작을 때는 개입경로의 풍부성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2명으로 구성된 배심단의 평의과정에서 개입이 20번 있었다면,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의 총 수는 실질적으로 66이 아니라 20이 된다. 따라서 $N > S$ 조건은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의 실질적인 총 수가 구성원의 수에 의해서만 정의되도록 구조적인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이다.

예를 들어, 3명의 토론자들(A, B, C)이 B, A, B, C, A의 순서로 토론에 개입하였다면,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의 총 수는 $S=3(3-1)/2=3$ 이다. 또한 이때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가 모두 한번 이상 사용되었으므로, 실제로 생성된 개입경로의 수도 $K=3$ 이다(A-B, A-C, B-C). 마지막으로, A-B 경로가 2번 사용되고, A-C 경로와 B-C 경로가 각각 한 번씩 사용되었으므로 개입경로가 실제로 사용된 총 횟수는 $N=4$ 이다. 따라서 이때의 개입경로의 풍부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RI = \left(\frac{3-1}{3} \right)^{\ln(4/3)} = 0.89$$

개입경로의 풍부성 지수의 정의를 자세히 보면, 만약 평의과정에서 두 사람의 배심원들만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다른 배심원들은 완전히 침묵을 지켰다면 오직 한 개의 개입경로($K=1$)만 생성된 것이고, 평의과정을 통하여 배심단 내에서 개입경로가 전혀 분화되지 못한 것이므로 개입경로의 풍부성은 $RI=0$ 이 된다. 따라서 RI 의 최솟값은 0이다. 개입경로가 실제로 사용된 총 횟수(N)가 고정적일 때 생성된 개입경로의 수(K)가 많을수록 RI 의 값은 커진다. 반대로 생성된 개입경로의 수(K)가 고정되었을

때는 개입경로의 사용 총 횟수(N)가 클수록 RI 은 많은 횟수의 대화개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입들이 정해진 경로에서만 발생할 뿐 상대적으로 경로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풍부성은 더 낮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개입경로의 풍부성 지수 RI 공식에 포함된 $((K-1)/S)$ 는 일종의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의 수에 대한 실제로 생성된 개입경로 수의 비율’이고, N/S 는 ‘발생 가능한 개별 개입경로의 사용빈도 평균’ 혹은 ‘개별 개입경로당 사용빈도’이다. 따라서 RI 는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의 총 수(S)의 효과를 통제한 것이므로 구성원의 수가 각기 다른 배심단들의 개입경로의 풍부성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지수이다.

집단토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와 상관없이 RI 의 최솟값은 언제나 0이지만, 최댓값은 토의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K=S$ 이고, $N=S+1$ 일 때 즉,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가 실제로 모두 생성되었고, 총 개입의 빈도가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의 수보다 오직 한 개 더 많을 때 RI 는 최대가 된다. 따라서 RI 의 최댓값은 순수하게 S 에 의해서만 좌우되고, S 는 순수하게 구성원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구성원의 수가 $I=5$ 일 때는 $S=10$ 이고, 따라서 RI 의 최댓값은 0.9900 이 된다. 구성원의 수가 $I=6$ 일 때는 $S=15$ 이고, 따라서 RI 의 최댓값은 0.9956이 된다. 구성원의 수가 $I=12$ 일 때는 $S=66$ 이고, 따라서 RI 의 최댓값은 0.9998이 된다. 만약 구성원의 수에 상관없이 RI 의 최댓값을 언제나 1이 되도록 표준화(normalize)하고자 한다면 위의 RI 를 그것의 최댓값 $((S-1)/S)^{\ln((S+1)/S)}$ 으로 나누어주면 된다. 그러나 배심평의 상황에서는 구성원의 수에 따른 RI 최댓값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RI 의 최댓값을 언제나 1이 되도록 표준화하는 것이 거의 실익이 없다.

개입경로의 균등성

개입경로의 균등성은 생성된 개입경로들의 사용빈도가 개입경로들 사이에 얼마나 골고루 혹은 균질적으로 분포하는가의 개념인데, 앞서 설명한 규준 엔트로피 지수 E 를 개입경로에 적용하여 수치화할 수 있다. 개입경로의 균등성을 지수화하기 위한 규준엔트로피 지수에서 S 는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의 수이고, $p_1, p_2, p_3, p_4, \dots, p_S$

는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들이 사용된 총 빈도(혹은 개입의

총 빈도)에 대한 각 개별 개입경로의 사용비율이다. 각 개입경로의 사용비율들($p_1, p_2, p_3, p_4, \dots, p_S$)이 서로 동등할수록 특정한 시점에서 어떤 개입경로가 사용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므로 규준엔트로피 E 는 개입경로 사용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수이고, 따라서 또한 개입경로의 균등성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기타 가능한 지수

한 개의 개입은 여러 개의 발언들로 구성될 수 있어서 개입과 발언은 개념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분석단위이므로, 본 연구에서 검토되는 세 가지 개념들 이외에도 ‘개입빈도의 동등성’과 ‘개입시간의 동등성’이 또 다른 평의의 양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개입빈도의 동등성과 개입시간의 동등성이 나타내는 평의의 양적 특성은 본 연구에서 검토되는 세 가지 개념들과 상당히 중복되는 정보를 함축하게 될 가능성 또한 높다. 예를 들어, 개입빈도의 동등성은 개입경로의 균등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개념일 가능성이 있고, 개입시간의 동등성은 발언빈도의 동등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개념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입빈도의 동등성과 개입시간의 동등성에 대해서는 별개의 연구에서 따로 고찰하고자 한다.

결 과

평의에서의 발언빈도와 발언시간

표 1을 보면 혼합배심평의에서 시민배심평의보다 발언시간의 평균이 훨씬 더 커서 혼합배심단의 인원이 적은 만큼 발언시간이 각 개인에게 많이 할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언빈도와 시간의 표준편차는 대체로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발언을 많이 혹은 오래 한 집단일수록 발언빈도와 발언시간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편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평의 중 발언빈도와 발언시간의 배심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배심평의의 양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기술하는 세 가지 지수

배심단	인원수	발언빈도 평균	발언빈도 표준편차	발언시간 ¹ 평균	발언시간 ¹ 표준편차
시민배심단 A	12	39.08	36.34	453.62	402.54
시민배심단 B	12	37.67	31.55	325.25	287.31
시민배심단 C	12	35.25	32.65	461.67	419.74
단독부 혼합배심단	6	77.00	70.77	825.83	818.87
합의부 혼합배심단	5	53.80	38.01	690.00	451.15

1. 단위 : 초

평의에서의 개입경로

표 2는 배심단별 개입경로의 개수와 사용빈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집계한 것이다. 시민배심단 C에서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들 중에 가장 작은 비율(58%)의 경로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단독부 혼합배심단에서 가장 큰 비율(87%)의 경로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발생된 개입경로가 사용된 빈도는 시민배심단보다 혼합배심단에서 평균적으로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혼합배심단에서 특정한 구성원들 상호간에 대화가 상대적으로 더 여러 번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집단의 크기가 작을 때 각 개인구성원들의 발언이나 대화의 기회가 더 커지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Baron & Kerr, 2003). 그러나 개입경로의 사용빈도는 그것이 커지는 만큼 표준편차도 2 배수 전후의 크기로 커지는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시민배심단보다 혼합배심단에서 평의의 일부 구성원들에게 편중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표 1과 표 2에 집계된 내용은 각 배심단의 평의에서 나타난 양적 특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표 1과 표 2에 집약된 배심단 평의의 양적 특성들을 한눈에 일견할 수 있도록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에서 각 점은 평의 구성원을 나타낸다. 점의 크기는 각 구성원의 상대적 발언빈도를 나타내는데, 크기가 큰 점일수록 그 구성원이 발언을 많이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시민배심단 A에서는 8번 배심원이 가장 많이 발언을 하였고, 5번 배심원이 가장 적게 발언을 하였다. 선은 개입경로를 의미하고, 선의 굵기는 개입경로가 사용된 상대적 빈도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는 재판장(J)이 말하고 나서 4번 배심원이 말하거나, 반대로 4번 배심원이 말하고 나서 재판장이 말한 경우가 가장 많다. 반면에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 3번 배심원이 말하고 나서 4번 배심원이 말하거나, 반대로 4번 배심원이 말하고 나서 3번 배심원이 말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시민배심단들은 구성원의 수가 혼합배심단들보다 많기 때문에 가능한 개입경로의 수가 많고, 따라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개입경로의 수도 많다. 그러나 시민배심단들 사이에서는 개입경로의 균형성(편중성) 등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두 개의 혼합배심단들은 서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합의부 혼합배심단이 단독부

표 2. 배심단별 개입경로의 개수와 사용빈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배심단	발생된 개입경로의 수 ¹	개입경로 사용 빈도의 평균	개입경로 사용 빈도의 표준편차
시민배심단 A	41(66)	3.30	5.92
시민배심단 B	43(66)	4.61	7.81
시민배심단 C	38(66)	3.29	6.03
단독부 혼합배심단	15(15)	8.93	8.99
합의부 혼합배심단	6(10)	5.90	9.88

1. 팔호안의 숫자는 모든 발생 가능한 개입경로의 수임.

혼합배심단보다 구성원의 수가 한 명 더 적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합의부 혼합배심단의 개입경로는 단독부 혼합배심단의 그것과 비교해서 매우 성긴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 두 명의 시민배심원들(3번과 4번)은 한 번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

평의의 양적 특성

그림 1에 집약된 평의의 양적 특성을 보다 엄밀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각 배심단 평의에서의 발언빈도의 동등성을 규준엔트로피 E_u 로 산출하고, 개입경로의 풍부성을 RI로, 그리고 개입경로의 균등성을 규준엔트로피 E_i 로 산출한 것이 표 3에 제시되었다.

발언빈도의 동등성(E_u)에서는 혼합배심단이 시민배심단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합의부 혼합배심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언빈도의 동등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합의부 혼합배심단은 다른 배심단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개입경로의

표 3. 배심단별 발언빈도의 동등성, 개입경로의 풍부성, 개입경로의 균등성

배심단	인원	발언빈도의 동등성(E_u)	개입경로의 풍부성(RI)	개입경로의 균등성(E_i)
시민배심단 A	12	0.6889	0.5500	0.3390
시민배심단 B	12	0.7218	0.5012	0.3652
시민배심단 C	12	0.7048	0.5020	0.3292
단독부 혼합배심단	6	0.7343	0.8598	0.6631
합의부 혼합배심단	5	0.8494	0.2922	0.3252

배심평의의 양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기술하는 세 가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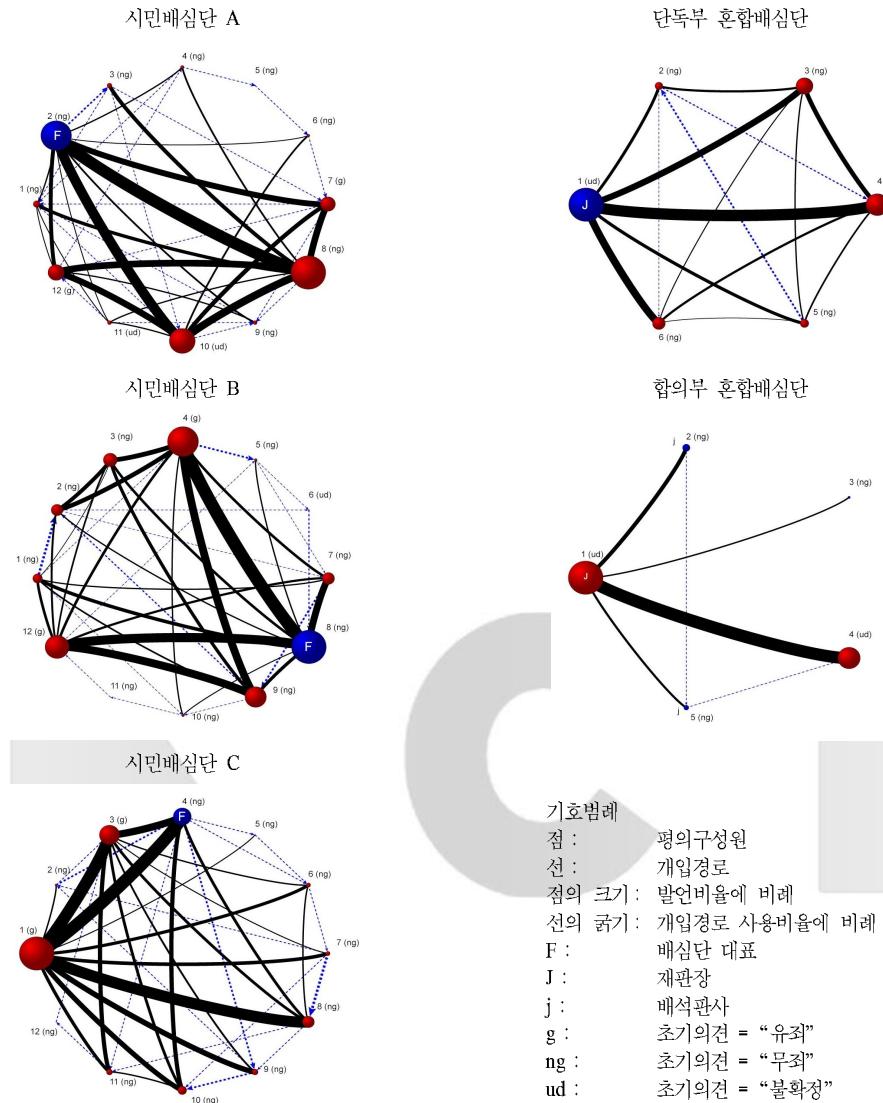


그림 1. 배심평의에서의 발언빈도 및 개입경로의 분포도

풍부성(RI)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입경로의 균등성(E_i)에서는 단독부 혼합배심단이 다른 배심단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지수 값을 보여주었다. 각 배심단들의 전반적 특성차이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하여 표 3의 지수들을 도표로 작성한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는 배심평의의 ‘양적 특성 프로파일’이다.

그림 2를 보면 배심평의의 양적 특성 프로파일에서 시민배심단들의 평의는 서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혼합배심단들의 평의는 서로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혼합배심단의 차이는 특히 개입경로의 풍부성(RI)과 개입경로의 균등성(E_i)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논의

본 연구는 모의배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배심평의의 양적 특성을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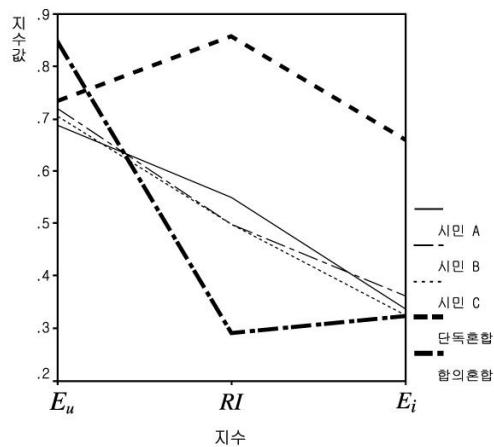


그림 2. 배심단별 배심평의의 양적 특성 프로파일(E_u =발언빈도의 동등성, RI =개입경로의 풍부성, E_i =개입경로의 균등성)

이다. 세계적으로 국민이 사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시민배심제나 혼합배심제 중 한 가지 방식을 베타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평의 방식을 서로 비교하기 위한 방법적 기법이 개발된 바는 거의 없다. 그러나 2007년부터 한국에서 실시될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는 평의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의 배심평의 형태가 모두 이루어질 것이고, 그 배심평의 형태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에 한국의 사회문화적 실정에 더 적합한 형태가 결정될 예정인 바, 현재는 시민배심평의와 혼합배심평의의 질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뿐만 아니라 양적 특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석틀의 개발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분석틀을 제안하기 위한 시도이다.

발언빈도의 동등성은 각 구성원의 발언빈도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균일하게 분포하는가의 개념이다. 발언빈도의 동등성(E_u)에서 혼합배심단이 시민배심단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합의부 혼합배심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언빈도의 동등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배심평의와 혼합배심평의에서 발견된 그러한 차이는 발언빈도의 동등성 지수 E_u 가 구성원 수에 의한 차이를 통제하고 산출된 것이므로 단순히 구성원 수의 차이에 기인한 수학적인 현상으로 도출된 결과는 아니다.

표 1에 제시된 배심단별 발언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보면 합의부 혼합배심단을 제외한 다른 배심단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크기가 비슷한 반면,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는 평균(53.80) 보다 표준편차(38.01)가 훨씬 작다. 즉,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는 발언의 총량에 비해서 구성원 간 발언빈도의 개인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뜻한다.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 구성원 간 발언빈도의 개인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발언빈도의 동등성(E_u)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림 1에 시각적으로 묘사된 발언빈도의 분포(점의 크기)를 보면,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는 두 사람(재판장과 한 명의 시민)이 상대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의부 혼합배심단은 5명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구성원 중 발언을 많이 한 40%(2/5)가 그 배심단에서의 전체 발언 중 65%(44%+21%)를 행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다른 배심단들에서도 발언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40%의 구성원들이 행한 발언의 비율을 보면 시민배심단 A가 78%, 시민배심단 B가 74%, 시민배심단 C가 77%, 그리고 단독부 혼합배심단이 75%였다.⁴⁾⁵⁾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는 발언을 많이 한

- 4) 발언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40%의 구성원들이 행한 발언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구성원이 12명인 시민배심단의 경우에 구성원의 40%는 4.8명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을 발언빈도가 많은 순서대로 서열분류한 후 상위 4명의 발언비율을 합산하고 그것에 5 번째 구성원의 발언비율의 80%를 더 해주었다. 구성원이 6명인 단독부 혼합배심단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40%는 2.4명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을 발언빈도가 많은 순서대로 서열분류한 후 상위 2명의 발언비율을 합산하고 그것에 3 번째 구성원의 발언비율의 40%를 더해주었다.
- 5) 구성원 중 40%가 발언의 65%-78%를 점유한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모의배심원들의 평의는 그것이 시민배심이건 혼합배심이건 간에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던 Vilfredo Pareto(1848-1923)는 1896년에 소위 ‘파레토 법칙(Pareto's Law)’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이 법칙은 한 사회의 구성원 중 상류층 20%가 그 사회의 모든 부의 80%를 점유한다는 것이다. 이 파레토 법칙은 부의 분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거듭 확인되는 법칙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회의에 소요되는 시간의 20%에서 회의의 안건 중 80%가 결정되고, 제품에 대한 불평의 80%는 불평하는 소비자들 중 20%에 의해 신고된다(Morrow, 1996). 또한 최근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에서 발표된 한 연구(안용렬, 2005, <http://janice.kaist.ac.kr/wiki/wiki.php/CyWorld/Summary?action=print>)에 의하면 사용자가 1,000만명에 달하는 한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싸이월드”的 미니홈피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친구(일촌) 네트워크의 분포가 20%의 소위 마당발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80%의 네트워크가 점유되는 멱함수분포(power-law distribution)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

사람들의 발언이 총 발언의 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배심원단들에 비하여 낮고, 그러한 낮은 점유율에 의하여 발언빈도의 균형성이 높게 산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보면 규준엔트로피 지수 E_u 는 발언빈도의 동등성을 잘 나타내는 지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 발언빈도의 동등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구성원의 수가 적을 때 구성원들이 실제로 더 고른 빈도를 가지고 발언을 하게 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인지, 평의에 직업법관이 여러 명 참여할 때 더 고르게 발언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본 연구에서 몇 개의 배심단 자료를 이용하여 그러한 배심평의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모의재판을 이용한 많은 실험연구들이 누적되면 발언빈도의 동등성이 구성원의 수와 직업법관의 참여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반적 경향성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연구들을 위하여 규준엔트로피 지수 E_u 는 발언빈도의 동등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입경로의 풍부성이란 구성원들 사이에서 개입경로가 분화된 정도를 일컫는 개념인 바, 개입경로가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골고루 생성되는지, 아니면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생성되고 다른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생성되지 않는지에 관한 개념이다. 표 3을 보면 단독부 혼합배심단의 경우에는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가 모두 실제로 생성되었으므로 개입경로의 풍부성이 매우 높은 반면,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는 개입경로의 풍부성에서 다른 배심원단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표 2를 보면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 10개의 가능한 개입경로들 중에서 6개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즉, 합의부

레토 법칙을 집단토론 상황의 일반법칙으로 간주하면 구성원 중 발언빈도 순으로 상위 20%가 모든 발언의 80%를 점유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집단토론에 대한 파레토 법칙의 적용여부, 더 나아가서 배심평의에 대한 적용여부는 실증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그 법칙을 한 가지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한국의 모의배심원들의 평의는 전체적으로 민주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배심원 경험을 통해 사법제도 속에서 어떤 집단보다도 균형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개인들이 계속 늘어간다면 배심제도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균형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문화의 성숙을 위한 좋은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혼합배심단에서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들 중에 60%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그 비율은 시민배심단들에서의 비율보다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 개입경로의 풍부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는 각 개입경로 당 평균사용빈도(N/S)가 시민배심단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즉, 합의부 혼합배심단의 경우에는 각 개입경로 당 사용빈도에 비하여 실제로 생성된 개입경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합의부 혼합배심단의 경우에는 새로운 개입경로가 생성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입경로의 분화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 개입경로의 풍부성이 낮은 것은 그림 1에서도 시각적으로 확인해 나타나고 있다.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 다른 배심단에 비하여 발언빈도의 동등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개입경로의 풍부성이 현저히 낮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 각 구성원은 비교적 고르게 발언하였으나 그 발언들이 거의 대부분 한 사람(재판장)과 대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평의과정에서 배심원들 상호간의 대화보다는 각 배심원들이 재판장과의 대화를 많이 교환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의 평의는 일종의 리더쉽을 가진 재판장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식 의사소통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단독부 혼합배심단의 경우에는 합의부 혼합배심단에 비하여 발언빈도의 균형성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가 모두 생성될 정도로 개입경로의 풍부성이 높다. 즉, 단독부 혼합배심단에서는 판사를 비롯한 소수의 구성원들이 다른 배심원들에 비하여 발언을 많이 하였으나 그 “다른 배심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발언이나마 판사를 향하여 행한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 배심원들과의 대화를 위하여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잠정적이나마 본 연구에서는 혼합배심제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혼합배심단의 평의는 평의에 참여하는 직업법관의 개인적 특성과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의초기 의견의 분포에 따라서도 그 양태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두 개의 혼합배심단은 구성원의 수(5 v. 6)와 평의에 참여한 직업법관의 수(1 v. 3), 그

리고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초기의견 분포에서도 차이가 나므로 그림 2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차이가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혼합배심단의 구성원 수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합의부 혼합배심단에 참여한 배석판사들이 발언을 극히 적게 하였기 때문에(그림 1의 점의 크기 참조), 두 혼합배심단의 전반적 특성에서 나타난 극단적 차이는 평의를 주도한 직업법관의 개인적인 평의진행방식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초기의견 분포에서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합의부 혼합배심단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초기의견에서 3명이 무죄의견을, 그리고 2명이 불확정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평의초기에 유죄의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그림 1 참조). 합의부 혼합배심단내에서 평의초기에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대립이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의 역동성이 높지 않았고, 따라서 개입경로의 분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1을 보면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 다른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확한 초기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재판장이 역시 불확정 초기의견을 가진 한 명의 배심원과 집중적으로 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는 재판장이 무죄 초기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는 많은 대화를 하지 않은 반면, 초기의견이 불명확한(유죄 혹은 무죄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한 사람의 배심원과 집중적인 대화를 하였다는 사실은 재판장 스스로가 무죄심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초기의견이 불명확한 한 사람의 배심원을 설득하여 만장일치에 의한 무죄평결을 도출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반면에 단독부 혼합배심단의 경우에는 명확한 초기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판사가 유죄 초기의견을 가진 배심원뿐만 아니라 무죄 초기의견을 가진 배심원들과도 비교적 고르게 대화하였고(그림 1의 개입경로의 굵기 참조), 판사의 그러한 평의진행 방식은 일반시민 배심원들 사이의 대화도 유도 혹은 촉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에 두 유형의 혼합배심단에서 판사의 평의진행방식에 대한 이런 추정이 옳다면, 평의에 직업법관이 참여하는 혼합배심단에서 배심원들이 토의하는 태도 혹은 양태가 참여하는 판사의 평의진행방식에 의한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의에 참여한 직업법관의 성향에 따라서 평의의 양태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현상이 법정의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관하여 앞으로 법학적인 또는 사회이념적인 검토가 또한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배심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어도 2012년 까지는 합의부 관할 사건들이 그 대상사건이 될 예정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 2장 참고). 그러나 공판절차가 한명의 재판장과 두 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에 의해 주재되더라도, 평의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시민배심평의에 의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여 판사가 참여하는 혼합배심평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판부를 구성하는 세 명의 판사들이 모두 평의에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장만 평의에 참여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만약 한국의 제도에 혼합배심평의 절차가 포함된 이유가 합의된 의견의 도출에 실패한 배심원들에게 법률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평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합의재판부 판사들이 모두 평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합의재판부 판사들이 모두 평의에 참여하는 것은 재판장만 참여하는 것에 비하여 더 많은 법률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당하게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배심원들에게 주어 배심원들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단일 사례에서 발견된 결과이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 합의부 혼합배심단의 평의가 단독부 혼합배심단의 평의에 비하여 개입경로의 풍부성(RI)과 개입경로의 균등성(E)이 월등히 낮게 나타난 것(그림 2 참고)은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또한 앞으로 한국에서 합리적인 사법참여 재판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독부 혼합배심단과 합의부 혼합배심단에서의 배심원들의 평의행동과 판단과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한다.

단독부 혼합배심단과 합의부 혼합배심단의 평의에서 나타난 이러한 양적 특성의 차이가 단독부와 합의부라는 보다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지, 혹은 직업법관의 개인적 성향에 의한 것인지는 앞으로 많은 실험연구들이 누적되어야 파악될 수 있는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단독부 혼합배심단과 한 개의 합의부 혼합배심단의

평의를 분석하였으므로 각기 다른 형태의 혼합배심단에서 나타나는 평의특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수들은 많은 연구결과들이 누적되었을 때 평의의 양적 특성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개입경로의 풍부성 지수 RI 에는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가 실제로 생성된 경우($K=S$)에 개입의 총 빈도(N)가 클수록 값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즉, 특정한 배심단에서 구성원들의 대화개입이 매우 활발하여 개입경로가 새로이 생성되어갈 때는 풍부성 지수 RI 의 값이 점차로 증가하지만,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가 모두 생성된 이후에도 구성원들의 대화개입이 계속 활발히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풍부성 지수 RI 의 값이 점차로 작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가 실제로 생성된 경우에 개입의 총 빈도가 증가할수록 RI 의 값이 낮아지는 효과는 그다지 큰 효과는 아니다. 왜냐하면 개입의 총 빈도가 로그변환되어($\ln(N/S)$) 미치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실제 평의자료에서는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가 모두 실제로 생성되면 본 연구에서 제안된 RI 지수의 값이 매우 크게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입의 총 빈도(N)가 로그변환되어 RI 지수의 값을 낮추는 효과는 미미하므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가능한 개입경로가 실제로 생성된 경우는 개입의 총 빈도에 상관없이 $RI=1$ 로 간주하는 것이고, 둘째는 RI 의 공식에서 $K-1$ 대신 K 를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RI 의 최솟값이 0에 고정되지 않고 무한히 0에 수렴하게 된다. 두 가지 해결방안 중에서 어떤 방안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후속 연구가 요망된다.

개입경로의 균등성에서는 단독부 혼합배심단이 다른 배심단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양상을 보였고, 다른 배심단들은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단독부 혼합배심단에서 개입경로의 균등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모든 개입경로가 실제로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입경로들이 상대적으로 고른 빈도를 가지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독부 혼합배심단의 개입경로에서 나타난

높은 균등성은 앞서 개입경로의 풍부성과 발언빈도의 동등성에서 발견된 양상과 일관성을 가진다. 즉, 단독부 혼합배심단의 평의과정이 편사 혹은 일부 구성원들에 의해 장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배심단들의 경우에는 혼합배심단들에 비하여 구성원의 수가 많고, 가능한 개입경로의 수가 월등히 많으므로, 그 많은 개입경로들의 사용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생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집단의 과정과 집단 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에서도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집단의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실증되어왔다(Brey, Kerr & Atkin, 1978; Stephan & Mishler, 1952). 따라서 그림 1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민배심단들에서도 합의부 혼합배심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화개입이 일부 경로들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양상이 개입경로의 균등성 지수에 잘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발언빈도의 동등성, 개입경로의 풍부성, 그리고 개입경로의 균등성 지수들에 의해 산출된 수학적 결과와 실제 배심평의의 양상을 그대로 묘사한 그림 1의 시각적 도식을 서로 비교해 보면, 각 지수들은 그것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배심평의의 전반적인 양적 특성을 비교적 명확히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배심평의에 관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모의재판 연구와 실험연구의 평의자료에 대하여 이 지수들을 적용하고, 그러한 연구들이 누적되면 앞서 초두에서 제기한 “배심재판의 평의에 직업법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와 순수하게 일반시민들만 참여하는 경우에 평의 구성원들이 골고루 발언하는 정도 혹은 토의에 개입하는 빈도의 균형성에서 어떤 차이가 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하여 일관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사실판단 혹은 사실인정(fact-finding)을 위한 배심평의에서 구성원들의 발언과 개입이 편중되고 균형을 잃어 특정한 한 두 사람에게 독점되거나, 한 두 사람에 의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편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평의가 편중되지 않고 균형성 있게 이뤄지는 것은 구성원들의 개인적 심증이 다각도

에서 더 객관적으로 검토되고 제시된 증거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비교되고 겹증되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법전문가인 직업법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평의의 균형성(동등성 혹은 균등성)이나 풍부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제시될 수 있다면 두 가지의 평의 방식이 혼용 설계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제도발전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시민배심평의와 혼합배심평의의 구성원 수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가 평의의 독점 혹은 편향이 존재하는 것인지를 모호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빌언 빈도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평의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측정, 비교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수들은 향후에 이루어질 실험연구와 모의재판 연구에서 배심평의에 관한 중요한 쟁점을 규명하기 위한 일관되고 명확한 준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서 설명한 두 가지 형태의 혼합배심단의 차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수들은 새로운 연구쟁점을 발굴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서울.
- 박광배, 김상준, 이은로, 서혜선 (2005). 형사배심 평의에 서의 사회적 동조와 인지적 전향: 한국 최초의 시민배심 모의재판의 평의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심리학회 : 사회 및 성격 학회지, 19(3).
- Arce, R., Farina, F., Vila, C., & Real, S. (1996). Empirical assessment of the escabinado jury system. *Psychology, Crime and the Law*, 2, 175-183.
- Arce, R., Tortosa, F., & Alfaro, E. (2004). Verdicts and deliberation content analysis of judges and juries in the Spanish legal context. *Psychology in Spain*, 8, 1, 28-38.
- Attneave, F. (1959). *Applications of Information Theory to Psychology*.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Bakhtin, M. M. (1981). Discourse in the novel. In M. Holquist(Ed.), *The Dialogic Imagination : Four Essays by M. M. Bakhtin*. (C. Emerson & M. Holquist, Trans.).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 Baron, R. S., & Keir, N. L. (2003). *Group process, Group Decision, Group Action*. Buckingham : Open University Press.
- Brey, R. M., Kerr, N. L., & Atkin, R. S. (1978). Group size, problem difficulty, and group performance on unitary disjunctive task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224-40.
- Cajal-Blanco, B. (1994). El cambio de veredicto en el jurado : influencia de variables psicosocial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dad Autonoma de Barcelona, Spain. Martin et al.(2003)에서 재인용.
- Cowell, F. A. (1985). Measures of Distributional Change : An Axiomatic Approach *Review of Economic Studies*, 52, 135-51.
- Cowell, F. A. (1995). *Measuring Inequality*(2nd edition). Harvester Wheatsheaf, Hemel Hempstead.
- Holquist, M. (1990). *Dialogism : Bakhtin and His World*. New York : Routledge.
- Kaplan, M. F., & Martin, A. (1999). Effects of differential status of group members on process and outcome of deliberatio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2, 347-364.
- Kaplan, M. F., & Martin, A. (2000). The influence of expert and non-expert members of juries : the Spanish jury as an illustration. In S. Nagel(Eds.), *Handbook of Global Legal Policy*(Chapter 12, pp. 209-222). New York : Marcel Dekker.
- Litchfield, J. A. (1999). Inequality : Methods and Tools. Text for the World Bank PovertyNet website : <http://www.worldbank.org/poverty>.
- Morrow, E. P. (1996). Applying Pareto's law.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October, 89-90.
- Martin, A. M., Kaplan, M. F., & Alamo, J. M. (2003). Discussion content and perception of deliberation in Western European versus American juries. *Psychology, Crime & the Law*, 9(3), 247-263.
- Miller, G. A. (1964). *Mathematics and Psychology*. New

- York : John Wiley and Sons.
- Palmer, A. (1988). *El Jurado y la Psicología Social*.
Barcelona : PPU. Martin et al.(2003)에서 재인용.
- Shannon, C. E. (1949).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The Bell System Technical Journal*, Vol 27, 623-656.
- Shannon, C. E., & Weaver, W. (1963).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 Univ. of Illinois Press.
- Stephan, F. F., & Mishler, E. G. (1952). The distribution of participation in small groups : an exponential approxim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7, 598-608.



Three Descriptive Indices to Summarize the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Mock Jury Deliberations

Kwang B. Park Eunro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to suggest three descriptive indices that summarize the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mock-jury deliberations. Applying to the transcripts of the jury deliberations from a simulated trial by jury that was conduct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04, the three indices that use 'Utterances' and 'Interventions' as the units of analysis appeared to adequately represent the equality of utterance frequencies among the jury members, the richness of intervention paths, and the evenness of the use of the intervention paths. It was explained that these indices may be useful to determin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of juries if consistently applied to the verbatim data of jury deliberations from experimental mock-jury studies and such data are accumulated in Korea in the future. Applying the three indices to the deliberation transcripts from the mock jury trials revealed the possibility that the equality, richness and evenness of the deliberations of the escabinado juries or mixed juries may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personal style of the professional judge participating in the deliberation and/or the distribution of pre-deliberation opinions.

Key word : Jury Deliberation, Lay Jury, Escabinado Jury, Mixed Jury, Quantitative Characteristic, Utterance, Intervention, Intervention Path, Equality, Richness, Evenness, Indices

원고접수 : 2005년 10월 24일
심사통과 : 2006년 2월 4일